



영진종합건설주식회사

YOUNGJIN CONSTRUCTION INC.

우)42465 경북 칠곡군 동명면 동명팔거천3길59-12 / 전화(054)975-2157 / 팩스(053)624-3503

문서번호 : 영진(전)제2020 - 0910호

시행일자 : 2020.09.11.

수 신 :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

참 조 : 기전사업부장

제 목 : 마곡지구 관련 업무회신

선결	부장	김민준	지시	
접수	일자	2020.09.11.	결재	
	시간			
	번호	3987	공람	
처리과	기전사업부			
담당자	장재우			

1. 관련문서

기전사업부-3749(2020.09.04.)호 및 기전사업부-3344(2020.08.05.)호

- 위호와 관련 마곡지구(1, 2구역) 내 교통신호기 지중매설배관의 선통시험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선통시험 결과

구역	시험일시	대상장소 (개소)	선통시험결과		동원 장비 및 인원
			적정	부적정	
1구역(영진)	5.25~6.2(7일)	48(132)	127	5	1톤 트럭, 5명
2구역(용우)	5.29~6.4(5일)	53(151)	147	4	1톤 트럭, 3명

나. 향후 조치계획

- 현 상태에서 지중매설배관 선통 작업(도로굴착 및 복구 포함)을 시행할 경우 장비 및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무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됨
- 공사 완료 후 4년 이상 경과된 상황이며, 신호등 설계시 도로횡단 배관 자재 선정 등의 과오가 있을 수 있는 상태이므로 선통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별도 지급시 작업이 가능하며, 향후 유사 사례 발생가능성 농후하므로 선통 작업시 스틸배관의 교체 필요성이 있습니다.

붙임 : 마곡지구 전기공사(교통신호기)관련 건의사항 1부. 끝.

영진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하 태



마곡지구 전기공사(교통신호기) 관련

2020.09.09.(수)

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정인 교통신호등공사가 완료되었으나, 시설물 인수 기관인 강서도로사업소의 아스팔트횡단구간 관로 선통 요청 관련 발주기관(SH) 요청에 대한 건의사항임

I 현황

■ 교통신호등 공사

- 공사기간 : 2014년~2016년
- 시 공 사 : 영진종합건설(주), 용우이엔씨(주)

■ 강서도로사업소 요청사항

- 아스팔트 횡단구간 관로 선통 요청

II 문제점

■ 도로횡단굴착 사용 배관 : PVC 배관으로 설계(스틸파이프가 아님)

- 시공시 감리원이 입회하여 시공 → 아무런 하자가 없었음(시공사는 설계도대로 시공)
- 서울시 교통신호등 공사의 경우 도로횡단시 모두 스틸파이프로 시공
- PVC 배관의 경우 도로횡단에 사용할 경우 상당한 지반하중을 받는 대형 화물차 등 통행으로 시일경과에 따라 도로구조적 문제로 침하된 것임

■ SH공사 요청사항

- 공사 완료 후 4년 이상된 상황에서 무상 선통작업 요청은 현실적으로 무리

■ 교통신호등 시공사 조치사항

- 사업소 준공서류 감리단 확인 후 제출완료(시공사 -> SH공사)

- 신호등 시공사는 무상으로 인력 및 장비 동원하여 선통 조사함
 - 도로에 다른 공사로 굴착한 흔적이 있음
 - 교통신호등 공사 이후 다른 굴착공사(가스, 통신 등)로 인한 관로 파손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음

■ 공사 하자보수기간 도래

- 마곡지구 신호등 설치 후 4년이 경과되었음(공사 하자보수기간 1년)

- 시설물 인수기관에서 인수받지 않았으나, 신호등 설치로 인해 도시개발이 완료된 주민들에게는 경제활동에 이바지하였음

III

건의(요구)사항

- 도로횡단에 사용되는 PIPE가 스틸이 아닌 PVC로 설계되었던 점
- 설치 후 1년~4년이 경과, 운영상태에서 무상 선통요구는 무리한 요구로 수용불가
- 선통에 소요되는 비용(인력 및 장비 동원) 지급 요청
 - SH자체 설계후 예산확보후 시공필요
- 선통 비용 지급할 경우 회사 일정 협의 후 진행 가능
- 행정기관 업무협조(도로굴착 신청 등). 끝.

※ 붙임 : 1 (전기공사업법 시행령 11조의 2관련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)

※ 참고자료

■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[별표 3의2] <개정 2016. 12. 30.>

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(제11조의2 관련)

전기공사의 종류	하자담보책임기간
1. 발전설비공사	
가.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	7년
나. 가목 외 시설공사	3년
2. 터널식 및 개착식 전력구 송전·배전설비공사	
가.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	10년
나. 가목 외 송전설비공사	5년
다. 가목 외 배전설비공사	2년
3. 지중 송전·배전설비공사	
가. 송전설비공사(케이블공사 및 물밀 송전설비공사를 포함한다)	5년
나. 배전설비공사	3년
4. 송전설비공사(제2호 및 제3호 외의 송전설비공사를 말한다)	3년
5. 변전설비공사(전기설비 및 기기설치공사를 포함한다)	3년
6. 배전설비공사(제2호 및 제3호 외의 배전설비공사를 말한다)	
가. 배전설비 철탑공사	3년
나. 가목 외 배전설비공사	2년
7. 산업시설물,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	1년
8.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	1년